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수자원 및 해양개발 분야/산지의 개발 및 골재 채취 분야)

◀ 수자원 및 해양개발 분야 ▶

질의

면적이 약35,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본 사업은 00도 북서 전면해상(00항 항계 내)의 현재 운영중인 연안여객선 항로를 준설하는 사업(수심 DL(-)14m, 준설량 24,991천㎥)으로서 해양 준설 사업(항로준설)으로 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시 검토되는 홍수, 토사유출, 사면안정성에 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은 본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사업은 관리청인 00지방해양항만청에서 1995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으로, 2005년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현재의 사업자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완료된 사업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남기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특성과 추진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본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로서 「항만법」 제10조가 정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상(바다)에서 준설사업을 하는 경우,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영향은 없으나 준설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조류와 파랑의 진행방향이 변경되어 인근 해안에 침식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준설에 따른 조류 및 파랑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근 해안지역 침식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00지구 해안도로(L=970m)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는 중 해안도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참고로, 대상지역은 해일위험 지구가 아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지침서, 2010.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p. 38”의 본문 내용

질의 회신

을 참고한 결과 “개발사업의 범위 중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또는 길이 2km 이상의 규모를 말한다.(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 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동법 제25조의 3에 따른 해일위험 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록되어 있음.

답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써,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가 정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이 사업의 규모를 선 개념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지의 개발 및 골재채취 분야▶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 - 사.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8)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에서의 협의대상이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라고 한정되어있으나 산지개발이외의 농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도 채광계획인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채광계획인가와 관련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개

발행위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며,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시 의제처리 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질의

채광계획 인가 신청 시 제출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상에서는 지형, 강우량, 태풍 등에 의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할 수 있는 자료로 인용할 수 있으나, 해상(바다)에서 광물(규사, 희유원소 등)들에 대하여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변

해상(바다)에서 광물을 채광 하는 경우 채취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조류와 파랑의 진행방향이 변경되어 인근 해안에 침식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시 광물채취에 따른 조류 및 파랑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근 해안지역 침식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공익사업(도로)으로 인해 묘지이장을 하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묘지설치 허가 신청을 하려 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중중묘지 8기 240m²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묘지 설치 허가 전에 부지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8,813㎡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시 부지면적 5,000㎡이상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00시 00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행정계획 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답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사업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인 경우 계획 수립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

본 사업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신청면적 30,693㎡에서 총 골재채취량 58,035㎡(모래, 자갈)에 따른 골재(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답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경우

육상골재 채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본 사업지구는 최초허가 '8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설묘지를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시·군 승인면적 120,000㎡와 금번 증설면적 22,000㎡를 계획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여부? (기허가지와 증설면적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으로 수립된 지역임)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비고2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는 대상규모가 5,000㎡ 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다만, 기존 허가면적(120,000㎡)외에 증설허가(22,000㎡)를 받는 경우라면 증가되는 대상규모가 30% 미만이고 45,000㎡ 미만으로서 협의대상이 아님.

질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개발사업 - 사(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 실무지침서 대상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시기에 중앙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시 소방방재청으로 협의 요청해야 하는지?

답변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확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장일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확정권자일 경우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방재정보광장